



환·경·관·련·질·의·응·답

각 사업장에 이산화탄소 의무저감 문의

Q

각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저감하라고 하고 있는지 여부, 기업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 건물 연구소 호텔 코엑스와 같은 상용건물, 이러한 건물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것이 있는지 현재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부속서1에 들어간다면 의무화 할 사업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에서는 post-2012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고, 저탄소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자체 및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등 사회 각 부분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및 기업 등에서 정부와의 자발적 협약, 에너지 진단 등을 통해 산업·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 중이다.

아울러, post-2012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 편입가능성은 향후 협상여건 등에 따라 감축 의무 부담시기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post-2012 협상역량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삭감 대상사업장의 범위 및 도입시기 등은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후 구체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그라비아 인쇄시설의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관련

Q

환경부령 제270호(2007. 12.31)에 따라 기존 그라비아 인쇄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적용이 되어지는 바이에 따른 대책으로 방지설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소요금액을 경기도의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지금 융자계획'에 따라 지원 받아 진행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1)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융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구입/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융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를 구비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7월 1일자부터 그라비아인쇄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적용되어지는 바, 관할시청에서는 7월 1일 이후에나 당사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기를 접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합니다.

3)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당사는 융자대상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방지설비공사를 7월 이후에나 진행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을 자비로 감당하자는 엄두가 나질 않는군요. 어차피 진행해야 할 공사라면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7월1일 이후부터 신고/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라도 신고/허가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시설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그라비아 인쇄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2007.12.31일 전부개정(환경부령 270호, 2007.12.31)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카목 2)에 따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따라 동 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 부칙 제6조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VOC 물질 문의

Q

환경부고시 제2007-121호 VOC 관련하여 고시된 내용중

1) 최소 비등점란 의미가 무엇인지?

2) 배출시설(시행령 제39조 제2항) 외 관리대상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고시내용 : 나. 배출시설(시행령 제39조 제2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 °C 이하

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환경부고시 제2007-121호(2008.8.7)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내용에서 최소 비등점이란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화되는 최소의 온도점을 말하여, 동 고시 나목의 배출시설 외 관리 대상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자가측정면제방법

Q

당사는 배출허가시 고온소각로에서 불화수소(HF)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3종이지만 월2회 자가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소각물이 없어 월3~6일정도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단 8월은 월3일씩 2번소각하여 측정할수있지만 그이후는 소각물이없어 폐쇄신고예정입니다. 그러면 3~7월사이 자가측정을 1회이상 할수없는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담당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당사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의 가동 중에 실시하면 될 것이며, 매월 2회 이상 측정해야 하나 배출시설의 가동이 없어 매월 2회 이상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동되는 날에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자가측정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동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 할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시 위법 여부



우리 사업장은 유연탄을 연료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1종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저유황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 탈황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대기배출허용기준 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탈황시설(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위반되는 항목이 있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탈황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방지시설(탈황시설)의 면제신청을 하시거나, 기존 방지시설이라면 폐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체연료사용승인대상여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의거 에너지 회수 기준을 만족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폐합성수지, 폐가구)을 사용하는 소각보일러의 경우, 재활용신고 대상인지여부?

나. 이러한 경우, 고체연료 사용승인대상인지 여부?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라. 일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A

연료로 사용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형연료 제품이고,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400kg 이상(연속가동은 200kg)인 전용보일러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각보일러의 설치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고체연료 사용금지역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고체연료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가능합니다. 소각보일러의 사용연료가 고형연료제품이 아닌 폐기물이거나,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전용보일러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시설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고형연료제품을 이용한 전용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만 KW 이거나, 폐기물 일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세정시설과 흡수에의한 시설 차이(흡수액 사용유무 관련)

Q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방지시설중 세정에 의한 시설과 흡수에 의한 시설을 분류해 놓았는데 분류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세정집진시설”은 입자상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나, 수용성의 가스상 물질도 제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처리 대상 오염물질이 분진이라면 세정에 의한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흡수에 의한 시설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함유량 기준초과 행정처분 여부

Q

저는 소규모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보일러연료(중유)를 시료채취 후 검사한 결과 황함유기준 1%를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관계 기관에 공급업자로부터 출하전표, 판매전표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공급자의 황함유량 1%로 이하 중유로 믿고 사용하였으며, 공급자 또한 자기 과실로 인하여 초과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드시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현재 과태료부과 규정에 공급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라 합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지역에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자의 과실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